

디지털 파일 납본 안내

1. 개요

- 「국회도서관법」(2016.12.16.) 전부개정으로 디지털파일 납본 조항 추가

「국회도서관법」(전부개정 2016. 12. 16 법률 제14375호)

○ 제7조제4항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
○ 제7조제5항 : 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2. 취지

- 책자와 동일하게 디지털 파일을 국가자산으로 영구보존하고 입법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

3. 납본 대상자료

-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 (제7조1항)
- **학위논문 1부와 디지털 파일 (제7조4항)**
※ 납본법은 2부이지만 실질적으로 1부만 제출바랍니다.

4. 파일 납본 방법

- 디지털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송부
- 온라인 송부
 - 웹하드: <http://mail.nanet.go.kr/Guest> ID: data PW: data1234
 - 이메일: data@nanet.go.kr

5. 제출 기한

-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

6. 문의처

-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(공공저작물:788-4257, 학위논문:788-4163)

